

경비 등의 송금명세서

(앞쪽)

1. 과세기간 ~

2. 공급받는 자

① 상 호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성 명	④ 주민등록번호

3. 거래·송금명세 및 공급자

⑤ 일련 번호	⑥ 거래 일	⑦ 상 호 ⑧ 성 명	⑨ 사 업 자 등록번호	⑩ 거래명세	⑪ 거래금액	⑫ 송금 일	⑬ 은 행 명 ⑭ 계좌번호
계							

작성 방법

1. 이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·어민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·축산업·복합농업,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, 법인은 제외합니다)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
나.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(법인을 포함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, 거래금액을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5조의3제9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
구 분	내 용
①	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
②	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(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)
③	운수업을 경영하는 자(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)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(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④	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이나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(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합니다)을 공급받은 경우
⑤	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, 산업정보, 산업상비밀, 상표권, 영업권,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, 지하수의 개발·이용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
⑥	「항공법」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
⑦	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
⑧	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

2. '3. 거래·송금명세 및 공급자'는 거래일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명세 등을 적습니다.

3.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, 내용 등을 적습니다.

4. ⑭란은 무통장입금, 계좌자동이체, 지로송금 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.